

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〔고영찬 의원 발의〕

의안번호	2710
------	------

발의일자 : 2025. 5. 29.

발 의 자 : 고영찬 의원

찬 성 자 : 정순기, 고성미 의원

1. 제안이유

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있어 표결 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 처리하지 않고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조항의 내용을 삭제함으로써, 회의 운영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법제처 자치법규 일제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원장이 두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조항의 내용을 삭제함
(안 제1조~제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 예산조치

다. 기 타

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첨부

2) 입법예고: 2025. 5. 30. ~ 2025. 6. 5.

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2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1조(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명위원회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
금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.

제2조(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
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
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1.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명위원회 조례」

현행	개정안
제5조(회의 및 의사) ① 삭제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u>다만,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</u>	제5조(회의 및 의사) ② ----- ----- ----- ---. <단서 삭제>

2.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현행	개정안
제5조(회의) ① · ② (생략)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u>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</u>	제5조(회의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. <단서 삭제>

현행조례

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명위원회 조례

[시행 2024. 03. 08.] [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459호, 2024. 03. 08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3.5.31., 2024.3.8.>

제2조(구성)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제7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. <개정 2013.5.31., 2024.3.8.>

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된다. <개정 1998.9.26., 2011.03.18., 2018.11.9., 2022.8.15.>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단,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 <개정 2013.5.31., 2024.3.8.>

1. 관계공무원

2.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6명 이내

3.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지명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며 겸임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5.31.>

제3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<개정 2013.5.31.>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3.5.31.>

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

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3.5.31.>

[제목개정 2013.5.31.]

제4조 삭제 <2013.5.31.>

제5조(회의 및 의사) ① 삭제 <2013.5.31.>

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6조(간사 및 서기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,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. <개정 98.9.26., 2000.12.16., 2005.5.24., 2006.12.29., 2015.5.18.>

제7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<개정 2013.5.31.>

1. 지명의 제정, 변경 또는 조정
2. 서울특별시 금천구(이하 “구“라 한다)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 <개정 2013.5.31.>
3.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<개정 2013.5.31.>

제8조(지명의 조사) ① 제7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구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,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. <개정 2013.5.31.>

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,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호칭이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(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)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. <개정 2013.5.31.>

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. <개정 2013.5.31.>

제9조(의견청취 등)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 조정 또는 의결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련한 구·동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의 청취 등 필요한

협조를 구할 수 있다. <개정 2013.5.31.>

제10조(수당)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3.5.31.>

제11조(회의록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5.31.>

1. 회의일시 및 장소
2.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
3.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
4.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
5. 그 밖에 중요한 사항

제12조(보고) 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 사항은 심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5.31.>

제13조(시행규칙)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5.31.>

부칙(제22호, 1995.03.02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188호, 1998.09.26)(행정기구설치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부터 ⑦까지 생략

⑧서울특별시금천구지명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중 “총무국장”을 “행정관리국장”으로 하고, 제6조중 “동정계장이”를 “동정업무 담당주사가”로 한다.

⑨부터 까지 생략

부칙(제293호, 2000.12.16)(행정기구설치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서울특별시금천구지명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중 “충무과장“을“ 주민자치과장“으로 한다.

②부터 ⑧까지 생략

제3조 생략

부칙(제432호, 2005.05.24)(행정기구설치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생략

② 서울특별시금천구지명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중 “주민자치과장”을 “자치행정과장”으로, “동정업무담당주사”를 “동행정업무담당주사”로 한다.

③부터 ⑨까지 생략

부칙(제474호, 2006.12.29)(행정기구설치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부터 ③까지 생략

④ 서울특별시금천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중 “동행정업무담당주사”를 “업무담당주사”로 한다.

⑤부터 까지 생략

부칙(제661호, 2011.03.18)(행정기구설치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10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.

부칙(제741호, 2013.5.31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호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의 지명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조례에 따른 위촉일까지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부칙(제809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, 2015.5.18.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

②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중 “자치행정과장” 을 “마을자치과장” 으로 한다.

부 칙(제996호,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, 2018.11.9.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부터 ⑫까지 생략

제15조제4항 중 “행정지원국장” 을 “행정문화국장” 으로 한다.

⑬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행정지원국장” 을 “행정문화국장” 으로 한다.

⑭부터 ⑯까지 생략

부 칙(제1249호, 2022.8.15.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2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~⑨ 생략

⑩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행정문화국장” 을 “행정안전국장” 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마을자치과장” 을 “자치행정과장” 으로 한다.

⑪~⑰ 생략

부 칙(제1459호, 2024.3.8.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4. 07. 18.] [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507호, 2024. 07. 18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투자심사위원회,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,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,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1.12.31.>

[전문개정 2015.10.8.]

제2조(기능)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“라 한다)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 수립 및 투자사업, 재정공시, 예산성과, 민간투자에 관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“이라 한다)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지방재정계획에 관한 사항
 - 가. 지방재정 운영방향 설정
 - 나. 재원조달 방법 및 운영
 - 다. 중장기 투자사업 계획 수립
2. 지방투자심사에 관한 사항
 - 가.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
 - 나. 중·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
 - 다. 재원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등
 - 라. 사업의 경제성 및 효과성 등
3. 지방재정공시심의에 관한 사항
 - 가. 재정공시제도 운영 관련 공시방법, 공시내용 등에 대한 사항
 - 나. 특수공시사항 선정방법, 절차 등 준수여부에 대한 사항

4. 예산성과금심사에 관한 사항

가.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

나.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

다.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

라.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

마.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

5. 민간투자사업심의에 관한 사항

가.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

나. 민간투자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
다.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
라.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

마.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

6. 구청장이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7. 삭제 <2024.7.18.>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10.8.>

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부위원장은 예산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. <개정 2015.10.8.>

③ 위원은 위촉직과 당연직으로 구성하며,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담당국장, 도시계획업무담당국장, 재난안전대책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민간위원(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국·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)으로 하되, 지역대표 및 재정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13.10.31, 2015.10.8.>

④ 위원장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,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

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15. 10.8.>

제4조(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시 개최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6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기획예산 과장이 된다. <개정 2014.11.14.>

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7조(실무대책반)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부서간의 의견 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.

② 실무대책반의 구성,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8조(심의안건의 배부)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
제9조(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)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부서 등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0조(심의록) 위원회 개최 시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1.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
2. 출석위원 성명

3. 심의사항

4. 심의결과

5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1조(수당)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(조례 제664호, 2011.04.18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·공시심의위원회 조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칙(조례 제759호, 2013.10.31.)(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~ ② (생략)

③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3항 “건설교통국장”을 “안전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부칙(제787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, 2014.11.14.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

①부터 ④까지 생략

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기획홍보과장”을 “기획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⑥부터 ⑩까지 생략

부칙(조례 제823호, 2015.10.8.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촉직 위원의 임기 및 연임 규정 적용례)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된 위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조례 제1128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, 2020.12.31.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~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

부 칙(제1223호, 2021.12.31.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)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시행한다.

부 칙(제1507호, 2024.7.18.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7호를 삭제한다.

관 계 법 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24. 5. 17.] [법률 제19551호, 2024. 1. 9., 타법개정]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3. 8. 8., 2024. 1. 9.>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

가.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·위치 및 구역의 조정

나.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 및 그 운영·관리

다. 산하(傘下) 행정기관의 조직관리

라.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·감독

마. 소속 공무원의 인사·후생복지 및 교육

바.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

사. 예산의 편성·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

아. 행정장비관리,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

자. 공유재산(公有財産) 관리

차. 주민등록 관리

카.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

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마.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·운영

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
사. 묘지·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·관리

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
자. 청소,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

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

3. 농림·수산·상공업 등 산업 진흥

가. 못·늪지·보(洑)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
나. 농산물·임산물·축산물·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

다. 농업자재의 관리

라. 복합영농의 운영·지도

마.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·지도

바. 농가 부업의 장려

사. 공유림 관리

아.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

자. 가축전염병 예방

차. 지역산업의 육성·지원

카.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

타. 중소기업의 육성

파.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·지원

하. 우수지역특산물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

4.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

가. 지역개발사업

나. 지방 토목·건설사업의 시행

다. 도시·군계획사업의 시행

라. 지방도(地方道), 시도(市道)·군도(郡道)·구도(區道)의 신설·개선·보수 및 유지

마.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

바.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

사. 자연보호활동

아.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

자. 상수도·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

차.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
카. 도립공원, 광역시립공원, 군립공원,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

타.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, 녹지,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

파. 관광지,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

하.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

- 거. 주차장 · 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너.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
- 더.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
- 5. 교육 · 체육 · 문화 · 예술의 진흥
 - 가. 어린이집 · 유치원 · 초등학교 · 중학교 ·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 · 운영 · 지도
 - 나. 도서관 · 운동장 · 광장 · 체육관 · 박물관 · 공연장 · 미술관 · 음악당 등 공공 교육 · 체육 ·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
 - 다. 시 · 도유산의 지정 · 등록 · 보존 및 관리
 - 라. 지방문화 · 예술의 진흥
 - 마. 지방문화 · 예술단체의 육성
- 6.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
 - 가.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(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)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 · 감독
 - 나. 지역의 화재예방 · 경계 · 진압 · 조사 및 구조 · 구급
- 7. 국제교류 및 협력
 - 가. 국제기구 · 행사 · 대회 유치 · 지원
 - 나.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· 협력